

# 보조사료 생균제의 관리는 대폭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이 인 호

비록 작용기전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생균제가 항생물질 대체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고 있는 사실로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AGPs)에 대한 사용규제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는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에도 장래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생균제가 개발되어 양축농가들에게서 효능의 검증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보조 사료로 시·도에 등록된 상당수의 생균제와 같이 생균이 장내에서 집락 화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 균수에도 턱없이 부족한 1,000개미만의 생균만이 함유된 생균제라든

가, 현행법의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편법과 위장등록을 한 생균제의 경우에는 순기능의 효과 외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역기능의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양축농가들은 주목해야하고, 선진축산국가의 생균제 연구학자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

생균제 내에 들어 있는 생균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약제내성 유전자의 전달 및 확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최근 들어서 학술논문을 통해서 발표됨으로써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사료용 생균제는 인체에 전달될 수 있는

약제내성 유전자의 저장소가 될 수 있으며, 그 유전자가 가축 병원균에 전달되고 다시 식품을 통해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 결국, 분변으로 환경에 배출되어 축적되거나 선택압력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약제내성 유전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술논문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균제의 관리 는 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되고 있다.

또한, 인체용 생균제는 일부 국가에서 항생물질 보조제로 처방되어 판매되고 있다. 사람이나 돼지와 같이 후장 발효 동물에서 생균이나 세균포자는 위·장관 내에서 생물막을 형성한 다른 미생물집단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환경에서 각종의 항생물질에 노출되면 내성균이 출현하고 그 내성균과 유전자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인체·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을 위해서 각 생균제 균주는 항생제 내성 양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 내성이 전달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현행의 보조사료 생균제 관련법규도 엄격하니 더 완화시켜달라는 건의를 하는 협회도 있으나,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은 생균제 관련 국제동향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편법, 불법, 위장등록 및 약사법위반행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할 문제의 일부업체들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부담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줄 수 있

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추가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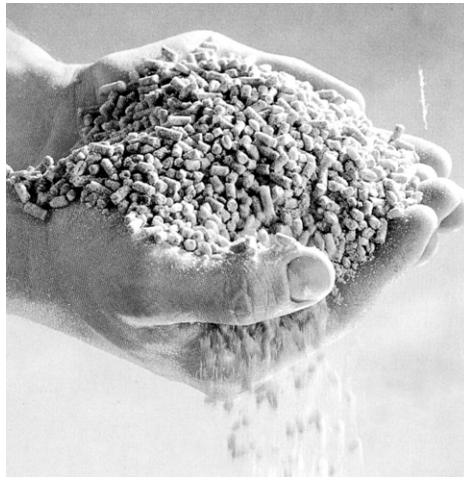
현재, 유럽에서는 EU의 유럽식품안전국(EFSA)의 규제에 따라 소수의 생균제 만이 허가되고 있고, 동물영양과학위원회(SCAN)가 1)장독소 유전자, 2)세포독성, 3)획득 항생제 내성 포식 등 동물용으로 안전하다는 위해평가(Risk Assessments)가 이루어져야 EFSA의 허가를 받아 EU의 25개 회원국가 전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에, 생균제에 대한 시·도의 사후관리의 부실로 인한 폐해(弊害)가 현재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제적인 대세를 외면한 채 일부 인사들의 더 이상의 규제완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 보조사료 관련규정은 일본의 사료 안전법 보조사

료 관련법규를 그대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법규로 둔갑시킨 뒤에 일부 수정, 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나, 문제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1995년 이전에 일본도 많은 생균제 업체가 난립하고 있었고, 관련 법규도 그리 엄격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국으로부터 수입 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생균제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자국의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균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일본정부에서 제정한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의 제품에 대해서만 사료첨가물로서 사용이 가



능하도록 조치하여 현행의 사료안전법 법규가 탄생되도록 했고, 현재도 외국에서 개발된 생균제가 1Kg도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조사료 비전문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미 이러한 일본정부의 생균제 관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업계 인사들에게 국내 최초로 일본의 진행상황과 최종 법규의 확정상황을 소개하면서, 생균제 재평가작업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 항생물질 허가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 자국의 업체들에게 냉혹한 잣대를 들이던 일본의 생균제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라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언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대의명분이 서는 법규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료 비전문가들이 과학적 반론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버티기를 시도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작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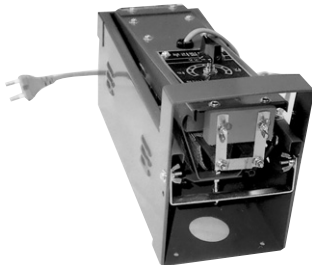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생균제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선진 축산국가에서는 최근 들어서 생균제에 대한 유효성의 연구와 병용해서 환자 및 동물장관 내의 병원성 및 항생제 내성 장구균의 분리 등을 비롯한 유해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한 안전성의 확보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축농가들도 이 점을 더 중시해서 생균제 제품을 신중히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U나, 일본의 생균제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의 생균제 관리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양계**

#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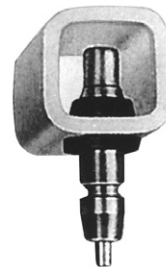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기 저렴하다

##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7 - 743 - 6887